

2023년 소공인 마케팅지원사업 공고

(재)시흥산업진흥원(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)에서는 집적지내 소공인의 홍보 콘텐츠 및 기업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하여 『2023년 소공인 마케팅지원사업』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04월 12일

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집적지(정왕본동, 정왕1동, 정왕2동, 정왕3동, 정왕4동, 배곧1동, 배곧2동) 소재에 10인 미만의 전자부품, 전기장비 제조 (업종코드 C26, C28) 소공인으로서,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
- 지원규모 : 15개사 내외 (업체당 300만원 이내)
※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
- 지원분야 및 내용 :

구분	지원 내용
멀티 미디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홈페이지 : 회사의 제품 특징 등을 반영한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지원◦ 모바일 앱/웹 : 회사의 제품 특징 등을 반영한 홍보용 모바일 웹/앱 지원◦ 홍보 동영상 : 촬영 및 그래픽을 활용한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지원
디자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전자 카탈로그 : 플래시 또는 PDF 형태의 제품 홍보용 전자 카탈로그 지원◦ 종이 카탈로그 : 종이 카탈로그 디자인 및 인쇄 지원◦ 포스터/포장 디자인 : 포스터 등 인쇄 광고 디자인 및 인쇄 지원◦ 브랜드 개발 : 기업 및 브랜드의 이미지 강화를 위한 로고 제작 지원◦ 제품 디자인 : 완제품을 구성하기 위해 디자인 등 지원

2.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공고일 ~ 2023년 8월
-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필수	① 사업신청서	서식1
	② 사업자등록증 or 증명원	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(제조업 必)
	③ 소상공인확인서 (http://sminfo.smba.go.kr) *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, 소상공인 명시 * 주업종 : 기타기계장비제조업 必	확인서가 없을 경우, 상시근로자 확인서류**로 소공인 여부 확인 **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: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후 제출 상시근로자가 없을 경우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
	④ 자가진단 체크리스트	서식2
	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	서식3
	⑥ 사업계획서	서식4
	⑦ 기업정보조사서	서식5
	⑧ (홈텍스)업종코드 조회 인쇄	로그인>MY홈텍스>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> 주업종명(업종코드) 조회 후 인감 또는 자필서명날인 -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으나, 조회시 제조업이 아닌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(택1) * 최근 1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必)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+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
	⑨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	서식6
	⑩ 국세 / 지방세 완납 증명서	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(국세) 국세청 홈텍스, (지방세) 민원24
선택	⑪ 가점 증빙서류	백년소공인 확인서, 수출실적 증빙 서류 등

- 신청방법 : 등기우편, 방문 및 이메일 제출
 - 주소 : (15073)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, 시흥비즈니스센터 3층 301호
 - 이메일 : (tkzjwoans414@sida.kr) ☎ 031-434-8737

3. 평가 및 선정

- 선정기준
 - 사업신청서 접수후 선정 기준표에 의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
- 평가방법 :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
 - 요건검토 :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
 - 서류평가 :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※ 제출 서류에 대해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자(기업)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함
- 결과통보
 - 선정평가 이후, 개별 통보
 - ※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교육 참여자 및 신청자 가점 부여

4. 사업수행 및 지원금 정산

- (사업수행) 특화센터로부터 승인 된 마케팅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소공인과 수행업체(제작 개발 등)가 사업 실시
 - * 수행(공급)업체별 비교견적서 검토를 통해 최저가 업체 선정
- (지원금 정산) 소공인 제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특화센터가 공급가액만 지급(최대 3백만원, 지원금액 한도 이상 비용은 신청인이 수행업체로 지급)
 - (지급대상) 수행업체(공급업체)
 - (서류검토) 비용지급 정산서류 확인 및 보완요청은 특화지원센터에서 실시

<정산서류 기준(안)>

- ▶ 지원금 지급(소공인 → 특화센터)을 요청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
 - ☑ 전자세금계산서 : 수행업체(공급업체)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
 - ☑ 거래명세서(비교 견적서 1부) : 구체적인 위탁 업무내용(수량, 단가 등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
 - ☑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: 통장사본은 공급업체명 또는 공급업체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
 - ☑ 완료보고서 : 신청인(소공인)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
 - ☑ 이체확인증 : 공급가액 및 자부담(부가가치세+정부지원금 초과분)에 대한 은행발급자료로서,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, 은행명,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
 - *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

<지원금 지급 유의사항>

- ☑ 지원사업에 소요 된 비용 중 소공인 자부담 부분(부가세 포함)은 제외하고 **수행업체(공급업체)에 특화센터가 직접 지급함**
- ☑ 1개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대 300만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, 소공인은 해당 실행비용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
- ☑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,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함

5. 지급제한 등

- 기업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아래사항에 해당된 경우 지원이 취소됨.
 - 제출서류 등 관련 문서의 위·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
 - 2023년 현재 기업부도 및 휴·폐업인 기업
 - 2023년 유관기관 지원사업 기수혜 및 수혜중인 자는 참여제한

6. 기타 유의사항

- 신청서,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,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,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
- 신청인은 수행업체(공급업체) 선정 시, 신청서 및 계획서 내 추진 내용과 업태/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로 선정해야하며,
- 수행업체(공급업체)는 4대 보험, 국세·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소공인(신청인) 본인과 민법상 친·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수행업체로 선정해야함
- 신청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, 사후관리 지도(완료평가)에 적극 협조해야하며,
- 수행 종료 이후 완료보고서와 정산 증빙자료를 10일 이내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로 제출해야하고 특화센터는 자료 미비 시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음

7. 문의 및 연락처

- 재)시흥산업진흥원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김재문 매니저
- 전화 : 031-434-8737, 이메일 : tkzjwoans414@sida.kr, 팩스 : 031-434-9663